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남은 과제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

1.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와 그 한계

2021년 11월 19일, 2021년 12월 10일, 2022년 1월 12일, 2022년 2월 15일, 2022년 6월 6일, 2022년 6월 8일, 2022년 7월 5일, 그리고 2022년 9월 15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각각 서울 중구,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서울 구로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경북 안동시, 그리고 서울 중구에서 스톱킹에 시달리던 끝에 피해자가 살해된 날짜다. 여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만을 열거하였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살인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스톱킹으로 시작되어 살인, 강간, 감금 등 중한 범죄 피해로 귀결된 사건의 규모는 더욱 크다. 또 한 사람의 스톱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스톱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간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던 동력

이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또 한 사람의 스톱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스톱킹 가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동력이라고 보인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스톱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톱킹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완전히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톱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는 응급조치(제3조), 사법경찰관이 스톱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제4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

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결정하는 잠정조치(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1조)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조치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음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20여 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규정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담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 역대 스토킹 관련 법률안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

가.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가정폭력처벌법」 참고 및 차별화

스토킹과 관련하여 국회에 최초(1999년)로 발의된 법률안은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염동연의원안)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

토보고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장소적 동일성을 갖는 부부간에 발생되므로 우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가 필요하지만,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과연 이러한 임시조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¹⁾이라는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자들은 장소적·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한 스토킹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을 지속 포함해 왔다.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관련 법률안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을 정리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발의되었던 법률안들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기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등의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해당 조치의 명칭은 임시조치, 응급조치(남인순의원안 및 김정훈의원안), 임시보호조치(정춘숙의원안), 현장조치(김삼화의원안), 신고 시 조치(김영식의의원안), 금지명령(이강래의원안) 등으로 상이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을 포함하게 된 것은 앞서 1998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관련 법률안들에 포함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접근금지, 경찰관서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²⁾와 같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

1)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희선(1999. 11월), 7쪽.

2)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김병태의원 등 13인 외 21인, 의안번호 151966, 제안일자 1999.5.24.)

〈표 1〉 국회에 제출된 스톡킹 관련 법률안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

연번	의안번호	제안일자	약칭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									
				명칭	의료 기관 위탁	퇴거 명령	위치 추적	기간 연장	불이행 제재 강화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1	151966	1999.5.24.	김병태의원안	임시조치	○								
2	162733	2003.10.13.	이강래의원안	금지명령	○								
3	172815	2005.9.27.	염동연의원안(1)	임시조치							○		
4	172472	2005.11.28.	염동연의원안(2)										
5	1803469	2009.1.9.	김재균의원안	임시조치	○								
6	1901321	2012.8.27.	이낙연의원안	임시조치	○								
7	1905532	2013.6.19.	김재남의원안	임시조치							○		
8	1913972	2015.2.13.	남인순의원안(1)	응급조치		○					○	○	
9	2000102	2016.6.3.	남인순의원안(2)										
10	2002063	2016.9.2.	김정훈의원안	응급조치									
11	2002537	2016.9.30.	정춘숙의원안(1)	임시보호조치		○					○	○	
12	2002641	2016.10.13.	김상희의원안	현장조치, (간급)잠정조치	○						○	○	
13	2008108	2017.7.20.	이동섭의원안	임시조치	○						○		
14	2008429	2017.8.8.	표창원의원안	현장조치, 임시조치	○	○					○		
15	2012464	2018.3.14.	추혜선의원안	응급조치	○						○		
16	2100036	2020.6.1.	정춘숙의원안(2)	임시보호조치		○					○	○	
17	2100050	2020.6.1.	남인순의원안(3)	(간급)잠정조치		○					○	○	
18	2101415	2020.7.3.	김영식의원안	신고 시 조치, (간급)잠정조치		○					○	○	
19	2101738	2020.7.9.	임호선의원안(1)	응급조치, (간급)보호조치									
20	2103278	2020.8.25.	황운하의원안	응급조치, (간급)보호조치									
21	2104200	2020.9.24.	서범수의원안	응급조치, (간급)보호조치									
22	2106860	2020.12.23.	박주민의원안	응급조치, (간급)잠정조치									
23	2107067	2020.12.30.	정부안	(간급)응급조치, 잠정조치									
24	2108321	2021.2.25.	장혜영의원안(1)	응급조치, 임시조치		○						○	
25	2110747	2021.6.10.	남인순의원안(4)	(간급)응급조치, 잠정조치							○	○	
26	2111777	2021.7.28.	양정숙의원안										
27	2111800	2021.7.29.	김상희의원안										
28	2112435	2021.9.3.	정청래의원안									○	
29	2113395	2021.11.18.	김미애의원안(1)									○	
30	2113929	2021.12.16.	이영의원안							○			
31	2113986	2021.12.20.	태영호의원안						○	○	○	○	
32	2114172	2021.12.30.	전주혜의원안(1)										
33	2114454	2022.1.18.	민형배의원안										
34	2114781	2022.2.16.	이종배의원안										
35	2115524	2022.5.6.	한병도의원안										
36	2115964	2022.6.15.	전주혜의원안(2)					○					
37	2116258	2022.7.1.	백혜련의원안										
38	2117397	2022.9.16.	송석준의원안					○					
39	2117466	2022.9.22.	임호선의원안(2)					○	○				
40	2117508	2022.9.23.	소병철의원안					○	○				
41	2117580	2022.9.28.	박광온의원안					○	○				
42	2117642	2022.9.29.	기동민의원안					○	○	○			
43	2117706	2022.9.30.	김영주의원안					○					
44	2117740	2022.10.5.	김미애의원안(2)					○	○	○			
45	2117908	2022.10.25.	장혜영의원안(2)					○	○		○	○	
46	2117975	2022.10.28.	김민석의원안					○	○				○
47	2118038	2022.11.1.	김선교의원안					○			○	○	
48	2118139	2022.11.7.	권인숙의원안								○	○	
49	2118260	2022.11.15.	이개호의원안										
50	2118644	2022.12.2.	정춘숙의원안(3)						○	○			○
51	2118822	2022.12.8.	이탄희의원안						○				
52	2118857	2022.12.9.	이성만의원안										
53	2118923	2022.12.14.	김미애의원안(3)										
54	2118933	2022.12.14.	홍정민의원안						○				

비고: 1. 제안일자 순 정렬. 2. 2022.12.20.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탁'이나 '퇴거명령'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해당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및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을 참고하여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21대 국회 이전에 발의되었던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이나 퇴거명령을 피해자 보호조치의 유형으로 두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제21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률안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서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이나 퇴거명령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이나 퇴거명령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서 제외되었으며,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의 결정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상이한 '잠정조치'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것을 전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종래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과는 차별화하여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요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살인, 강간 등 후속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긴급

임시조치가 아닌 긴급응급조치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스토킹 관련 법률안들이 처음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와 같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구상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김삼화 의원안에서 현장조치와 긴급잠정조치,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시되는 시점 및 절차에 따라 세분화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취해지는 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임시조치와 유사한 명칭과 성격으로 이해되었다.

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신변안전조치 도입 검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위상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의료기관 등 위탁과 퇴거명령을 고려하였던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 법률안들의 경향은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법률안들의 경향과 사뭇 다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제출된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전자장치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은 총 7건에 이르며,³⁾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10건,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8건⁵⁾으로 확인된다.⁶⁾

3) [제안일자 순] 전주혜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2), 소병철의원안, 박광온의원안, 김영주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2).

4) [제안일자 순] 태영호의원안, 소병철의원안, 박광온의원안, 기동민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2), 장혜영의원안(2), 김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정춘숙의원안(3), 이탄희의원안.

5) [제안일자 순] 이영의원안, 태영호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2), 기동민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2), 김민석의원안, 정춘숙의원안(3), 홍정민의의원안.

6) 한편,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원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된 내용은 아니다.

〈표 2〉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변안전조치 규정 내용 비교

「가장폭력처벌법」상 신변안전조치 도입	신변안전조치 확대	「범죄신고자법」상 신변안전조치 도입	「범죄신고자법」상 신변안전조치 준용
남인순의원안, 태영호의원안, 김선교의원안, 권인숙의원안	장혜영의원안	정청래의원안	김미애의원안
<p>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① ~ ④ (생략)</p> <p>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p>⑥ (생략)</p>	<p>제11조의2(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시간대·동선·회수 등을 대상자의 환경에 맞춘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4. 112시스템에 대상자와 핫라인 구축 5. 대상자의 신원정보 변경 지원 6. 거주지 이전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7.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p>② ~ ⑤ (생략)</p>	<p>제9조의2(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9조의3(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p>제17조의2(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p>

스토킹가해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잠정 조치 기간 연장 및 불이행 제재 강화 의견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특히 2022년 9월 15일 신당 동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신변안전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 도입 필요성 의견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은 크게 1) 「가정폭력처벌법」의 신변안전조치 도입(남인순의원안, 태영호의원안, 김선교의원안, 권인숙의원안), 2) 신변안전조치 전면 확대(장혜영의원안), 3) 「범죄신고자법」의 신변안전조치 도입(정청래의원안), 4) 「범죄신고자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김미애의원안)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시키는 두 가지 입법 방식으로 구분된다. 장혜영의원안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 정춘숙의원안(3)에 규정되어 있던 신변안전조치 내용을 참고하였다고 보이는데,⁷⁾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두루 포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혜영의원안에 포함된 신변안전조치의 상당수는 현재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표 2>는 신변안전조치 도입을 검토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도입 방향별로 구분하고 신변안전조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3. 스톱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가해자의 의지와 협조 너머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등 일련의 조치는 스톱킹 가해자에게 취해지는 것으로, 국가가 별도로 취하는 내용은 없는 가운데 사실상 스톱킹 가해자의 의지와 협조에 그 준수 여부를 기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정당한 권리나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스톱킹 가해자가 이들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층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는 쉽게 충족되기 어렵다. 도리어 경찰신고나 잠정조치 등 결정 통보 후 가해자의 스톱킹범죄가 이전에 비해 그 횟수가 잦아지거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스톱킹 가해자의 의지와 협조에 기반한 피해자 보호조치에의 한계를 노정하는 동시에, 국가가 스톱킹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원론적으로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 국회에 제출된 스톱킹 관련 법률안들과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인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는 별개로 참고인 또는 증

7) 정춘숙의원안(3)의 신변안전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시간대·동선·횡수 등 피해자 맞춤형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4.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별로 등록·관리, 핫라인 구축, 5.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지원, 6. 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일시 휴직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7.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포함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 정도가 빠르게 점진하는 스토킹 가해자들을 완전히 억제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스토킹 가해자의 의지와 협조에 좌지우지되도록 하지 않고 스토킹 가해자들의 조치 위반 시에만 제재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잠정조치 결정 통보 시 스토킹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임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하는 시점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위치 지급, CCTV설치, 신원정보 변경·보호, 보호시설 임시숙소 등 시설연계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실시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피해유형 중 성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⁸⁾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는 스토킹이 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의 신변안전조치 규정 신설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그 이행 여부를 맡겨 둔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를 인정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에서의 실무가 앞서고 법제도가 뒤늦게 이를 확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신변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국가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향점에 가깝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력·예산 등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리사회의 상상력의 총합을 명문화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

한편, 스토킹 재범위험성 측면에서 볼 때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한 층 엄정한 대응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잠정조치 결정으로부터 잠정조치 불이행을 포괄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기까지 평균 165.9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복된 잠정조치 불이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잠정조치 불이행은 그 자체로 별도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거듭된 잠정조치 불이행과 점진된 스토킹범죄의 위험 속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형사사법체계상 범행 현장에서의 현행법체포, 그리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구속을 스토킹범죄에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8) 경찰의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실시 중 성폭력 피해자가 해당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2020년 30.8%, 2021년 26.0%, 2022년 20.3%.

된다.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체포 및 구속의 전향적 검토는 종래의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라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교차되

어 있는 법질서 확립과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두 가지 가치를 천명하는 것이다.